

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. 10. 18 선고 2017가단3962 판결 [건물철거 및 토지인도]

전 문

원고A

피고B

변론 종결 2017. 9. 27.

판결 선고 2017. 10. 18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경남 고성군 C 대 316㎡, 같은 D 창고용지 588㎡ 중,
가. 별지 도면 표시 1, 2, 3,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(가) 부분의 지상 건물을 철거하고, 위
(가) 부분을 인도하고,
나. 별지 도면 표시 4, 5, 6, 7, 8, 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(나) 부분의 지상 건물을 철거하고,
위 (나) 부분을 인도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, ① 원고는 경남 고성군 C 대 316㎡, 같은 D 창고용지 588㎡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, ② 피고는 위 원고 소유의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, 2, 3,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(가) 부분, 같은 도면 표시 4, 5, 6, 7, 8, 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(나) 부분 위에 창고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(이하 피고가 점유 중인 부동산을 '이 사건 부동산'이라 한다)을 인정할 수 있다.

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위의 지상 건물을 철거하고,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를 부담한다.

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40년간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. 그러나 당사자들이 제출한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인근 부동산의 소유 관계, 소유자들의 관계, 이 사건 부동산을 두고 장기간 이어져 온 분쟁 등을 고려할 때,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기 어렵다(피고는 이 사건 변론기일에서 이 사건 부동산 매수의사를 밝히기도 하였다).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.

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인용한다.

판사윤준석

별지